

의안번호	2205036
의 퇴 인	구자근 의원
회 답 일	2024. 12. 17.
추 계 번호	24A4629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원전수출지원의 기본계획 등의 수립)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수출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원전수출지원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2	안 제6조(실태조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원전수출 및 원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3	안 제7조(원전수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원전수출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원전수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제1항)	의무규정
4	안 제9조(원전수출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원전수출 관련 정보를 원전수출사업자에게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제1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전수출지원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5	안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수출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원전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함(제1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수출을 위하여 원전산업에 관한 국제협력, 기술교류, 인적 교류, 공동연구개발 및 해외 원전사업 공동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6	안 제11조(원전수출사업자의 컨설팅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수출사업자의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실시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하게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7	안 제12조(원전수출사업자의 보조 및 융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수출 및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경우에는 원전수출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8	안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수출 및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함(제1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9	안 제14조(원전 생태계 관련 기자재·기술개발 및 용역 등의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수출 및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원전 생태계 관련 기자재·기술의 연구·개발사업 및 용역 등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수출사업자가 원전수출에 필요한 원전 생태계 관련 기자재 및 기술 등을 국내외에서 인증받는 데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5조(원전수출지원의 기본계획 등의 수립)	○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2	안 제6조(실태조사)	
3	안 제7조(원전수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4	안 제9조(원전수출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5	안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수출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원전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추진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행 재량사업의 확대 여부 등을 확
6	안 제11조(원전수출사업자의 컨설팅 지원)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7	안 제12조(원전수출사업자의 보조 및 용자)	정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안 제10조 등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의 현행 주요 재정사업은 다음과 같음 <table border="1"> <tr> <th>소관</th><th>현행 사업(세부사업 또는 내역)</th><th>2024예산</th></tr> <tr> <td>산업통상 자원부</td><td>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사업)</td><td>84,6억원 (전력기금)</td></tr> </table>	소관	현행 사업(세부사업 또는 내역)	2024예산	산업통상 자원부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사업)	84,6억원 (전력기금)									
소관	현행 사업(세부사업 또는 내역)	2024예산															
산업통상 자원부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사업)	84,6억원 (전력기금)															
8	안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전수출 및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행 재량사업의 확대 여부 등을 확정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안 제13조 등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의 현행 주요 재정사업은 다음과 같음 <table border="1"> <tr> <th>소관</th><th>현행 사업(세부사업 또는 내역)</th><th>2024예산</th></tr> <tr> <td>산업통상 자원부</td><td>에너지인력양성사업 (원자력 분야, R&D)</td><td>73억원 (기후기금)</td></tr> <tr> <td>산업통상 자원부</td><td>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원전기업 인력양성, 비R&D)</td><td>49억원 (전력기금)</td></tr> </table>	소관	현행 사업(세부사업 또는 내역)	2024예산	산업통상 자원부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원자력 분야, R&D)	73억원 (기후기금)	산업통상 자원부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원전기업 인력양성, 비R&D)	49억원 (전력기금)						
소관	현행 사업(세부사업 또는 내역)	2024예산															
산업통상 자원부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원자력 분야, R&D)	73억원 (기후기금)															
산업통상 자원부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원전기업 인력양성, 비R&D)	49억원 (전력기금)															
9	안 제14조(원전 생태계 관련 기자재·기술개발 및 용역 등의 지원)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전수출 및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원전 생태계 관련 기자재·기술의 연구·개발사업 및 용역 등을 지원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행 재량사업의 확대 여부 등을 확정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안 제14조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의 현행 주요 재정사업은 다음과 같음 <table border="1"> <tr> <th>소관</th><th>현행 사업(세부사업 또는 내역)</th><th>2024예산</th></tr> <tr> <td>산업통상 자원부</td><td>원전생태계 금융지원사업</td><td>1,000억원 (전력기금)</td></tr> <tr> <td>산업통상 자원부</td><td>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원전기업 역량강화)</td><td>53.3억원 (전력기금)</td></tr> <tr> <td>산업통상 자원부</td><td>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SMR 산업생태계 지원)</td><td>10억원 (전력기금)</td></tr> <tr> <td>산업통상 자원부</td><td>SMR제작지원센터구축사업</td><td>2억원 (전력기금)</td></tr> </table> － 참고로, 원전 기술개발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의 현행 주요 재정사업은 다음과 같음	소관	현행 사업(세부사업 또는 내역)	2024예산	산업통상 자원부	원전생태계 금융지원사업	1,000억원 (전력기금)	산업통상 자원부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원전기업 역량강화)	53.3억원 (전력기금)	산업통상 자원부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SMR 산업생태계 지원)	10억원 (전력기금)	산업통상 자원부	SMR제작지원센터구축사업	2억원 (전력기금)
소관	현행 사업(세부사업 또는 내역)	2024예산															
산업통상 자원부	원전생태계 금융지원사업	1,000억원 (전력기금)															
산업통상 자원부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원전기업 역량강화)	53.3억원 (전력기금)															
산업통상 자원부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SMR 산업생태계 지원)	10억원 (전력기금)															
산업통상 자원부	SMR제작지원센터구축사업	2억원 (전력기금)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소관	현행 사업(세부사업 또는 내역)	2024예산
		산업통상 자원부	원자력핵심기술개발(R&D)	13.6억원 (전력기금)
		산업통상 자원부	원전산업 글로벌시장 맞춤형기술 개발사업(R&D)	18.07억원 (전력기금)
		산업통상 자원부	고리1호기기기·설비활용원전안 전기술실증사업(R&D)	10.49억원 (전력기금)
		산업통상 자원부	원전 안전운영을 위한 핵심소재· 부품·장비국산화기술개발(R&D)	63.65억원 (전력기금)
		산업통상 자원	원전 안전부품 경쟁력강화 기술개발(R&D)	6.36억원 (전력기금)
		산업통상 자원부	가동원전 안전성향상 핵심기술개발사업(R&D)	297.2억원 (전력기금)
		산업통상 자원부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R&D)	332.8억원 (전력기금)
		산업통상 자원부	현장수요대응 원전 첨단제조기술 및 부품·장비 개발(R&D)	60억원 (전력기금)
		산업통상 자원부	원전해체경쟁력강화기술개발사 업 (R&D)	433.13억원 (전력기금)
		산업통상 자원부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산업부)(R&D) * 과기부 예산은 409.33억원	393.27억원 (전력기금)
		산업통상 자원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R&D)	243.12억원 (방폐기금)
		산업통상 자원부	사용후핵연료관리시설설계기술 개발 (R&D)	15.99억원 (방폐기금)
		산업통상 자원부	중·저준위방폐물 복합처분시설 안전관리 강화 기술개발(R&D)	50.56억원 (방폐기금)
		산업통상 자원부	고준위방폐물처분을위한부지환 경장기변화예측기술개발(R&D)	36억원 (방폐기금)

2. 상세 사유

- 제정안의 재정수반요인 중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안 제5조(원전수출지원의 기본계획 등의 수립), 안 제6조(실태조사), 안 제
7조(원전수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의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나

그 소요비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현재 「원자력 진흥법」 제16조¹⁾ 등에 따라 원자력산업실태조사(통계청 승인번호 105006)가 매년 수행되고 있음

□ 다음으로, 제정안에 따라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로 추진되어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되나, 현시점에서 관련 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합리적 가정에 따른 추계가 어려운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안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 안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안 제14조(원전 생태계 관련 기자재·기술개발 및 용역 등의 지원) 등의 경우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일부 수행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현행 사업이 확대되면 재정소요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
- 안 제9조(원전수출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안 제11조(원전 수출사업자의 컨설팅 지원), 안 제14조(원전 생태계 관련 기자재·기술개발 및 용역 등의 지원) 등의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행 재량사업의 확대 여부 등을 확정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제정안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재정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1) 「원자력 진흥법」 제16조(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이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자력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자력 관련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원자력 관련 기관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표 1]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관련 주요 재정사업 현황(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단위: 백만원)

관련 규정	주요 사업	2024예산
안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 등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사업)	84,6억원 (전력기금)
안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에너지인력양성사업(원자력 분야, R&D)	73억원 (기후기금)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원전기업 인력양성, 비R&D)	49억원 (전력기금)
안 제14조(원전 생태계 관련 기자재·기술개발 및 용역 등의 지원) 등	원전생태계 금융지원사업	1,000억원 (전력기금)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원전기업 역량강화)	53.3억원 (전력기금)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SMR 산업생태계 지원)	10억원 (전력기금)
	SMR제작지원센터구축사업	2억원 (전력기금)
	원자력핵심기술개발(R&D)	13.6억원 (전력기금)
	원전산업 글로벌시장 맞춤형기술 개발사업(R&D)	18.07억원 (전력기금)
	고리1호기기·설비활용원전안전기술실증사업(R&D)	10.49억원 (전력기금)
	원전 안전운영을 위한 핵심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술개발(R&D)	63.65억원 (전력기금)
	원전 안전부품 경쟁력강화 기술개발(R&D)	6.36억원 (전력기금)
	가동원전 안전성향상 심기술개발사업(R&D)	297.2억원 (전력기금)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기술개발(R&D)	332.8억원 (전력기금)
	현장수요대응 원전 첨단제조기술 및 부품·장비 개발(R&D)	60억원 (전력기금)
	원전해체경쟁력강화기술개발사업 (R&D)	433.13억원 (전력기금)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산업부)(R&D) * 과기부 예산은 409.33억원	393.27억원 (전력기금)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R&D)	243.12억원 (방폐기금)
	사용후핵연료관리시설설계기술개발 (R&D)	15.99억원 (방폐기금)

관련 규정	주요 사업	2024예산
	중·저준위방폐물 복합처분시설 안전관리 강화 기술개발(R&D)	50.56억원 (방폐기금)
	고준위방폐물처분을위한부지환경장기변화예측기술개발(R&D)	36억원 (방폐기금)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윤주철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윤주철	02-6788-4655	yjc@nabo.go.kr